

제11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 운영 위원회
2004. 8. 6 (금) 17:10

의원연구단 체의고
의등검록신청서 보고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1

의회 운영 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두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구성인원 : 정종기 의원 외 7인 (총무위 소속 2명, 산건위 소속 6명)
- 회부일자 : 2004. 8. 4.
- 상정일자 : 2004. 8. 6.

2. 근거

-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3조 및 제4조

3. 연구단체명

-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4. 설립목적

- 거창관광 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강구

5. 검토의견

- 등록연구단체의 적격 여부 :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설립 목적과 구성 인원, 회칙 등의 요건이 적합함.
⇒ 그러나 연구단체 지원규칙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된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거창관광

발전의정연구회는 등록 신청 시에 연구활동계획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연구단체등록과 연구활동계획서심의를 동시에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심의를 먼저 하고 연구활동계획은 본회의 보고 후에 심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회칙 제8조의 규정에 임원으로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 구성 현황이 없음.
-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침체되어 있는 거창관광의 문제점을 찾아 군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연간 연구 활동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 연구활동비 지급은 연구활동계획서에 활동기간이 2004. 8.1 ~ 2005. 7. 31까지 2개년에 걸쳐 계획되어 있으므로 2004년도 계획에 대한 예산지원을 심의하고, 2005년도 연구활동계획은 2005년도 예산결정 후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비지급 심의 시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안발생 시 심의 가능할 것임.